

「구미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년 5월 24일

나. 발 의 자: 김재우 · 김근한 · 김낙관 · 김민성 · 김원섭 ·
김정도 · 김춘남 · 박교상 · 신용하 · 양진오 ·
이지연 · 정지원 · 추은희 의원(13인)

다. 회부일자: 2024년 5월 24일

라. 상정일자: 2024년 6월 4일

제27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김 재 우 의원

나. 제안이유

- 우리 사회에 다양한 형태의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특히 위기가구 구성원의 경우 복지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낮거나 정보의 부재로 지원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시민들과 함께 발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안 제3조)
- 위기가구 발견 신고(안 제4조)
- 포상금 및 지급시기(안 제5조~제6조)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민법」 제777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국가공무원법」 제2조
 - 「지방공무원법」 제2조
 - 「교육공무원법」 제2조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장 창 곤

○ 본 조례안은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시민들과 함께 발굴하고 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 결과,

제 정 안
<p>제7조(포상금 지급의 제한) (생략) 1.~3.(생략) 4.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단, 발굴 활성화를 위해 13호, 21호, 22호 및 24호는 제외한다. 5.~7.(생략)</p>
<p>「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13호, 21호, 22호, 24호(포상금 지급 제한의 제외 대상)</p>
<p>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u>교습소의 교습자·직원</u></p> <p>21.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u>통의 통장</u></p> <p>2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u>관리주체</u></p> <p>24. 「전기사업법」, 「수도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u>검침 및 안전점검 관련 업무 종사자</u></p>

- 안 제7조는 포상금 지급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위기가구 발견 신고를 하더라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상을 정함. 그러나, 제7조 제4호의 내용 중 공무원이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대상은 신고의 의무가 당연히 발생함으로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임.

- 따라서, 포상금 지급의 제한에 해당되는 대상에게는 포상금 외 업무적 인센티브(통장 위촉 시 가산점 부여)등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위기가구 발굴 기회 확대를 위한 포상금의 금액과 연간 한도 하향 조정 필요에 따라 일부 조항 수정
-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포상금을 현금 또는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식 검토 필요. 이는 제정안 제6조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방법에 대해 시장이 따로 정할 때 결정할 수 있음.

6.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